KOSCA
대한전문건설협회
충청북도회

수신 : 회원제위

참조 :

제목 : **건설공사 직접시공 원칙 준수 철저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국토교통부의 건설현장 합동 단속 과정에서 불법 일괄하도급 및 직접시공 의무 위반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회원사의 법령 위반을 예방하고자 건설공사 직접시공 관련 주요 준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 28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의무가 적용되는 건설공사는 공사금액별로 정해진 비율 이상을 다른 업체에 맡기지 않고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이에 회원사께서는 붙임의 관련 법령을 확인하시고, 공사 수주 및 시공 과정에서 직접시공 의무와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법령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건설공사 직접시공 관련 법령 1부. 끝.

대한전문건설협회 충청북도회
회 장 류 근 형

담당자 부장 김영은 실장 하재종
시행 전건협 충북 제 732 호 (2026. 11. 18)
우 28776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중흥로 16(용암동) 전문건설회관 7층 / http://www.chungbuk.kosca.or.kr
전화 043-294-7671 전송 043-294-7675 / 전자우편